

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의안번호: 제164호
- 나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: 2022. 8. 29.
- 라. 회부일자: 2022. 9. 2.

2. 제 안 사 유

-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은 「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,
-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및 침출수를 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변 지역 오염 및 가스 안전사고 예방하여 난지도 매립지에 조성된 월드컵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3(의회동의 및 보고)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(재위탁)을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위탁사무명 :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·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」제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및 제4조(부산물의 처리 등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2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난지도매립지 포집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운영으로 매립지 상에 조성된 월드컵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·운영을 위탁함.
- 매립가스(LFG) 성분 중 주요 성분인 메탄가스는 가연성가스로 분류되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, 매립가스 처리시설 운영 시 전문성이 요구됨.

다. 위탁 사무의 내용

- 매립가스 포집·이송·정제·소각 등 관련 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, 개량
- 매립가스 포집공·관로 등의 유량, 온도, 압력, 매립가스 성상과 매립가스 표면발산, 감지정의 모니터링
-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공사의 시행, 물품의 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
- 기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번지 일대

- 운영일자 : 2002.02.01.~ 현재
- 시설규모
 - 쓰레기매립량 : 91,972천 m^3 , 매립면적 : 2.720천 m^2
 - 포집공 106공, 가스이송관로 14km, 송풍기, 정제기, 소각기 등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3.2.1. ~ 2026.1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(공개모집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949백만원('23년)
- 산출근거
 - 비정산비(인건비) 789백만원, 정산비(시설유지보수비) 160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('22.7.20.) : 적정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의 동의 및 보고) 제2항
- 「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, 제4조(부산물의 처리 등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나. 예산조치: 2023년 민간위탁금 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피재황)

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민간위탁 조례”)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.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 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1) 시설 운영 현황

- 본 시설은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일대 월드컵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.

- 난지도 매립지(하늘공원과 노을공원)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으는 106개의 가스 포집공과 14.1km의 가스 이송관로, 송풍기, 정제기, 소각기 등의 시설이 위탁관리 대상이며,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 시설 유지관리, 포집 및 처리시설의 유지보수, 매립가스 포집공·관로의 유량, 온도, 압력 등 모니터링, 시설운영과 관련된 공사의 시행 등임.

2) 위탁업체 현황

- 난지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은 최초 조성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02년부터 3년 단위 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, 2019년 8월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0년 재계약('20.2.1~'23.1.31) 하여 운영 중임.

3)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-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, 추진근거 및 필요성, 위탁사무 내용,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본 동의안에는 규정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.

제4조의4(민간위탁 동의안) ①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위탁사무명 |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|
| 3. 위탁사무 내용 | 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 |
| 5. 민간위탁기간 | 6. 수탁자 선정방식 |
|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| 8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|
| 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| |

4) 종합 의견

-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은 2023년 1월 31일에 현 위탁(재계약)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¹⁾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 6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²⁾이 수립된 이후,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음.

〈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〉

부서명	위탁사무명	유형		위탁기간	심의결과	비고
환경보전과	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·운영	재위탁(공모)	시설	3년	적정	

-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, 동의안 포함 사항 등 관련 규정의 요구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,

세부적으로 제출한 소요예산의 경우, 9억 4천9백만원³⁾(’23년)으로 지난 ’19년도 재계약 동의안에 제출한 8억 9천2백만원 대비 5천7백만원(6.4%)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, 인건비가 증가분의 대부분(82%)를 차지하며 지난 위탁기간 인건비 예산 대비 4천7백만원(6.3%) 증가하였음. 예산 증가분은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 적정하게 산출한 것으로 보임.

〈연도별 인건비 집행 내역〉 '1 1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		2021		2022
	예 산	실 적	예 산	실 적	예 산
위탁운영사업비(인건비)	69,327	69,327	71,952	71,952	75,744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에서는 시설형 수탁기관 사무의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며,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음.

2) 제8차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(환경보전과-22329, '22.6.23.)

3) '20년 소요예산 8억 9천2백만원(인건비 7억 4천2백만원, 시설유지보수비 1억 5천만원)
'23년 소요예산 9억 4천9백만원(인건비 7억 8천9백만원, 시설유지보수비 1억 6천만원)

관련하여 동 시설의 인력운영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3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부공원여가센터와 시설 운영을 위한 적정 인원 구성에 대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차 위탁 기간에는 협약 기준 12명의 정규직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.

〈기간별 인력운영 현황〉

구 분	1차	2차	3차	4차	5차	6차	7차
기 간	'02. 2. 1 '05. 1. 31	'05. 2. 1 '08. 1. 31	'08. 2. 1 '11. 1. 31	'11. 2. 1 '14. 1. 31	'14. 2. 1 '17. 1. 31	'17. 2. 1 '20. 1. 31	'20. 2. 1 '23. 1. 31
운영 인원	14명	13명	12명	11명	11명	11명	12명

한국지역난방공사는 회계관리·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회계감사 수감과 서부공원여가센터의 사전 사업절차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도 사업비의 회계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- 다만,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양호하나 매립가스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('02년 대비 80% 감소) 시설 노후 등에 대한 일부 지적이 있는 바, 가스 유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.